
2027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(안)

♣ 본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 개정,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학사조직 개편,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각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4.



아주대학교

주요 변경 사항

| 구분 | 주요 변경 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모집단위 변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첨단학과 선정에 따른 모집단위 개편 및 신설 - 산업공학과 → 첨단스마트산업공학과 - 응용화학과, 환경안전공학과 → '첨단에코에너지공학과' - 소프트웨어학과 → 'AI컴퓨터공학부' |
| 학생부교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수능 전 영역 응시 지원자격 요건 폐지 |
| 학생부종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학생부종합(지역의사선발전형) 신설 - 1단계 서류평가 100%(3배수) 2단계 1단계 점수 70% + 면접 30% - 진로권별 해당 지역 재학 및 거주 지원자격 적용,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◎ 고른기회2전형 지원자격 확대 |
|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(재외국민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(2026학년도) 단과대학별 모집인원 편성 → (2027학년도) 자연/인문 계열별 모집인원 편성 ◎ 약학과 선발 |

모집시기별 선발인원 및 전형유형, 방법

[수시, 정시]

| 시기 | 유형 | 전형 | 모집인원 | 전형방법 및 비율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수시 | 재외국민 (정원외) | 재외국민 (3년) | 전체(의학과, 간호학과, 약학과 제외) | 34 | [일괄] 수강능력시험 100 |
| | | | 의학과 | 2 | |
| | | | 간호학과 | 2 | [1단계] 수강능력시험 100 (10배수) [2단계] 1단계성적 60 + 면접 40 |
| | | | 약학과 | 2 | |
| | | | 소계 | 40 | |
| | 학생부 교과 | 학생부교과(고교추천전형) | | 365 | [일괄] 학생부교과 100 |
| | 학생부 종합 | 학생부종합(ACE전형) | | 519 | |
| | | 학생부종합(첨단융합인재전형) | | 244 | [1단계] 서류종합평가 100 (3배수) [2단계] 1단계성적 70 + 면접 30 |
| | | 학생부종합(지역의사선발전형) | | 6 | |
| | | 학생부종합(고른기회1전형) | | 94 | [일괄] 서류종합평가 100 |
| | | 학생부종합(고른기회2전형) | | 58 | |
| | | 학생부종합(특수교육대상자전형)(정원외) | | 10 | [1단계] 서류종합평가 100 (3배수) [2단계] 1단계성적 70 + 면접 30 |
| | | 학생부종합(국방IT우수인재1전형)(정원외) | | 23 | [1단계] 서류종합평가 100 (3배수) [2단계] 1단계성적 70 + 면접 30 + 신체검사/체력검정/신원조회(P/F) |
| | 소계 | | 1,319 | | |
| | 논술위주 | 논술(논술우수자전형) | | 182 | [일괄] 논술 80 + 학생부교과 20 |
| 실기/실적 위주 | 실기/실적(체육우수자(축구)전형) | | 10 | [일괄] 학생부교과 4 + 학생부 출결 1 + 실적 40 + 실기 30 + 면접 25 | |
| 수시 소계 | | | 1,511 | | |
| 정시 | 나군 | 수능(일반전형1) | | 10 | [일괄] 수능 95 + 면접 5 |
| | | 수능(농어촌학생전형) | 의학과 | 1 | [일괄] 수능 95 + 면접 5 |
| | | | 약학과, 자유전공학부 | 7 | [일괄] 수능 100 |
| | | 수능(일반전형2) | | 121 | |
| | | 수능(특성화고졸업자전형) | | 1 | [일괄] 수능 100 |
| | | 수능(기회균형전형) | | 7 | |
| | 수능(국방IT우수인재2전형)(정원외) | | 7 | [1단계] 수능 100 (5배수) [2단계] 1단계성적 80 + 면접 20 + 신체검사/체력검정/신원조회(P/F) | |
| | 다군 | 수능(일반전형3) | | 473 | |
| | | 수능(일반전형4)(교차) | | 12 | |
| | | 수능(농어촌학생전형) | | 50 | [일괄] 수능 100 |
| | | 수능(특성화고졸업자전형) | | 24 | |
| | | 수능(기회균형전형) | | 21 | |
| | 정시 소계 | | | 734 | |
| | 총 합계(재외국민 제외) | | | 2,357 | |

*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음

* 2025학년도 정원내 미충원 이월인원 1명 반영

* 학생부종합(국방IT우수인재1전형)은 수시 미충원 시 정시에 이월하여 선발함

* 수시 및 정시모집 최종 등록 결과에 따라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시행여부 및 세부 사항은 2026.02.13.(금) 오후 6시 이후
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

[전형기간 자율화]

| 시기 | 유형 | 전형 | 모집인원 | 전형방법 및 비율 |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자율화 | 재외국민 (정원외) | 전 교육과정 이수자 | 전체(의학과 제외) | 적정인원 | [일괄] 면접 100 |
| | | | 의학과, 약학과 | 적정인원 | [1단계] 수강능력시험 100 (20명) [2단계] 1단계성적 60 + 면접 40 |
| | | 북한이탈주민 | 전체(의학과, 간호학과 제외) | 적정인원 | [일괄] 면접 100 |
| | | | 의학과, 간호학과, 약학과 | 적정인원 | [일괄] 수강능력시험 40 + 면접 30 + 서류평가 30 |
| | 학생부 종합 | 학생부종합(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)(정원외) | | 112 | [1단계] 서류종합평가 100 (3배수) [2단계] 1단계성적 70 + 면접 30 |

*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 운영 일정은 수시, 정시 모집 및 운영시기와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음

* 합격, 등록 결과에 따라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

전형별, 모집단위별 모집인원

[정원내]

| 계열 | 단과대학 | 학과(부) | 수시모집 | | | | | | | | 정시모집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| | 고교 추천 전형 | ACE 전형 | 첨단 융합 인재 전형 | 고른 기회1 전형 | 고른 기회2 전형 | 지역 의사 선발 전형 | 논술 우수자 전형 | 체육 우수자 (축구) 전형 | 나군 | | | 다군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일반 전형 1 | 일반 전형 2 | 지역 의사 선발 전형 | 일반 전형 3 | 일반 전형 4 (교차) | |
| 자연 | 공과대학 | 기계공학과 | 20 | 42 | 0 | 6 | 5 | 0 | 5 | 0 | 0 | 0 | 0 | 31 | 0 | |
| | | 첨단스마트산업공학과 | 20 | 23 | 18 | 4 | 2 | 0 | 5 | 0 | 0 | 0 | 0 | 20 | 0 | |
| | | 화학공학과 | 5 | 17 | 0 | 1 | 1 | 0 | 5 | 0 | 0 | 0 | 0 | 6 | 0 | |
| | | 첨단신소재공학과 | 15 | 0 | 36 | 2 | 2 | 0 | 8 | 0 | 0 | 0 | 0 | 22 | 0 | |
| | | 첨단에코에너지공학과 | 14 | 0 | 36 | 2 | 2 | 0 | 8 | 0 | 0 | 0 | 0 | 26 | 0 | |
| | | 건설시스템공학과 | 7 | 12 | 0 | 2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7 | 0 | |
| | | 교통시스템공학과 | 7 | 12 | 0 | 3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7 | 0 | |
| | | 건축학과 | 10 | 23 | 0 | 3 | 2 | 0 | 9 | 0 | 0 | 0 | 0 | 10 | 0 | |
| | 융합시스템공학과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| |
| | 첨단ICT 융합대학 | 전자공학과 | 30 | 32 | 0 | 11 | 5 | 0 | 35 | 0 | 0 | 0 | 0 | 30 | 0 | |
| | | 지능형반도체공학과 | 12 | 0 | 24 | 4 | 2 | 0 | 12 | 0 | 0 | 0 | 0 | 27 | 0 | |
| | | 미래모빌리티공학과 | 22 | 0 | 42 | 7 | 5 | 0 | 14 | 0 | 0 | 0 | 0 | 47 | 0 | |
| |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| AI컴퓨터공학부 | 15 | 16 | 30 | 4 | 2 | 0 | 10 | 0 | 0 | 0 | 0 | 24 | 0 | |
| | | 사이버보안학과 | 7 | 15 | 0 | 2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7 | 0 | |
| | | 디지털미디어학과 | 17 | 41 | 0 | 5 | 2 | 0 | 0 | 0 | 0 | 0 | 0 | 10 | 0 | |
| | 자연과학 대학 | 국방디지털융합학과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| 수학과 | 3 | 10 | 0 | 1 | 0 | 0 | 16 | 0 | 0 | 0 | 0 | 3 | 0 | |
| | 인문 | 경영대학 | 경영학과 | 19 | 25 | 0 | 5 | 2 | 0 | 15 | 0 | 0 | 0 | 0 | 21 | 0 |
| 경영인텔리전스학과 | | | 9 | 15 | 0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0 | 0 | |
| 금융공학과 | | | 5 | 0 | 16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0 | 0 | |
| 글로벌경영학과 | |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인문대학 | | 국어국문학과 | 3 | 10 | 0 | 1 | 1 | 0 | 5 | 0 | 0 | 0 | 0 | 4 | 0 | |
| | | 영어영문학과 | 9 | 24 | 0 | 3 | 2 | 0 | 0 | 0 | 0 | 0 | 0 | 9 | 0 | |
| | | 불어불문학과 | 3 | 13 | 0 | 1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3 | 0 | |
| | | 사학과 | 3 | 13 | 0 | 1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3 | 0 | |
| 사회과학 대학 | | 문화콘텐츠학과 | 5 | 9 | 0 | 1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5 | 0 | |
| | | 행정학과 | 9 | 10 | 0 | 2 | 2 | 0 | 0 | 0 | 0 | 0 | 0 | 10 | 0 | |
| | | 심리학과 | 7 | 14 | 0 | 2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10 | 0 | |
| | | 스포츠레저학과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|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| 24 | 36 | 0 | 7 | 5 | 0 | 5 | 0 | 0 | 0 | 0 | 27 | 0 | |
| 자연 | | 의과대학 | 의학과 | 3 | 17 | 0 | 0 | 0 | 6♣ | 10 | 0 | 10 | 0 | ♣ | 0 | 0 |
| | | 간호대학 | 간호학과 | 7 | 25 | 0 | 2 | 2 | 0 | 0 | 0 | 0 | 0 | 22 | 12 | |
| | | 약학대학 | 약학과 | 0 | 15 | 0 | 0 | 0 | 0 | 5 | 0 | 10 | 0 | 0 | 0 | |
| | | 첨단바이오융합대학 | | 22 | 0 | 42 | 5 | 4 | 0 | 0 | 0 | 0 | 0 | 32 | 0 | |
| 자연 | | 다산학부 | 자유전공학부(자연) | 10 | 0 | 0 | 0 | 0 | 0 | 10 | 0 | 0 | 63 | 0 | 0 | |
| 인문 | 대학 | 자유전공학부(인문) | 5 | 0 | 0 | 0 | 0 | 0 | 5 | 0 | 0 | 48 | 0 | 0 | | |
| 합계 | | | 365 | 519 | 244 | 94 | 58 | 6 | 182 | 10 | 10 | 121 | ♣ | 473 | 12 | |

♣ 학생부종합(지역의사선발전형) 진료권별 선발인원: 남양주권, 의정부권, 이천권, 포천권, 인천서부권, 인천중부권 각 1명

♣ 정시 수능(지역의사선발전형)은 수시 학생부종합(지역의사선발전형) 각 진료권별 미충원 이월인원에 한하여 모집함

[정원외]

| 계열 | 대학 | 모집단위 | 수시 (재외국민) | | 자율화 | | | 수시모집 | | 정시모집 | | | | | | |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|
| | | | 재외국민 (2%) | | 재외국민 (모집인원외) | | 특성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| 특수 교육 대상자 전형 | 국방IT 우수 인재1 전형 | 나군 | | | | 다군 | | | |
| | | | 최대 모집가능인원 | 계열별 모집인원 | 전교육과정 이수자 | 북한이탈주민 | | | | 농어촌 학생 전형 | 특성고 졸업자 전형 | 기회형 전형 | 국방IT 우수 인재2 전형 | 농어촌 학생 전형 | 특성고 졸업자 전형 | 기회형 전형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0 |
| 자연 | 공과대학 | 기계공학과 | 7 | 21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3 | 2 | 2 | |
| | | 첨단스마트산업공학과 | 4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2 | 1 |
| | | 화학공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1 | 1 |
| | | 첨단신소재공학과 | 4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1 | 1 |
| | | 첨단에코에너지공학과 | 4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1 | 2 |
| | | 건설시스템공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1 | 1 |
| | | 교통시스템공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1 | 1 |
| | | 건축학과 | 4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2 | 1 |
| | 융합시스템공학과 | - | - | | - | - | 56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| 첨단ICT 융합대학 | 전자공학과 | 3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2 | 2 |
| | | 지능형반도체공학과 | - | | - | - | -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| | 미래모빌리티공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|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| AI컴퓨터공학부 | 3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3 | 1 |
| | | 사이버보안학과 | 1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1 | 1 |
| | | 디지털미디어학과 | 4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3 | 2 |
| | 자연과학 대학 | 국방디지털융합학과 | - | | - | - | - | 0 | 0 | 23 | 0 | 0 | 0 | 7 | 0 | 0 | 0 |
| | | 수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0 | 0 |
| | | 프런티어과학학부 | 4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5 | 0 | 0 |
| | | 첨단바이오융합대학 | 1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1 | 1 |
| | 다산학부 대학 | 자유전공학부(자연) | 2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3 | 1 | 3 | 0 | 0 | 0 | 0 | | |
| 인문 | 경영대학 | 경영학과 | 3 | 13 | 선발 | 선발 | 0 | 2 | 0 | 0 | 0 | 0 | 0 | 2 | 3 | 1 | |
| | | 경영인텔리전스학과 | - | | - | -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| 금융공학과 | - | | - | -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| 글로벌경영학과 | - | | - | - | 56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|
| | 인문대학 | 국어국문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0 | 0 |
| | | 영어영문학과 | 3 | | 선발 | 선발 | 0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0 | 0 |
| | | 불어불문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0 | 0 |
| | | 사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0 | 0 |
| | 사회과학 대학 | 문화콘텐츠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0 | 1 |
| | | 행정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0 | 0 |
| | | 심리학과 | 2 | | 선발 | 선발 | 0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0 | 0 |
| | | 스포츠레저학과 | - | | - | -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| |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| 5 | | 선발 | 선발 | 0 | 2 | 0 | 0 | 0 | 0 | 0 | 0 | 6 | 0 | 2 |
| | | 다산학부 대학 | 자유전공학부(인문) | | 1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2 | 0 | 2 | 0 | 0 | 0 | 0 |
| 자연 | 의과대학 | 의학과 | 2 | 2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1 | 0 | 0 | 0 | 0 | 0 | | |
| | 간호대학 | 간호학과 | 2 | 2 | - | 선발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2 | 0 | | |
| | 약학대학 | 약학과 | 2 | 2 | 선발 | 선발 | 0 | 0 | 0 | 2 | 0 | 2 | 0 | 0 | 0 | | |
| 합계 | | | 40 ¹⁾ | 선발 ²⁾ | 선발 ³⁾ | 112 | 10 | 23 | 8 | 1 | 7 | 7 | 50 | 24 | 21 | | |

- 1) 재외국민(2%):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(모집인원내)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인원 및 계열별 선발인원으로, 모집단위 소개에는 미포함
- 2) 전교육과정 이수자: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(전교육과정 이수자)는 모집인원 제한 없이 선발 모집단위에서 적정인원 선발
- 3) 북한이탈주민: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(북한이탈주민)은 모집인원 제한 없이 선발 모집단위에서 적정인원 선발

학생부 교과 및 출결 반영방법

1. 대상 전형: 학생부교과(고교추천전형), 논술(논술우수자전형), 실기/실적(체육우수자(축구)전형)

2.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

- 계열 구분 없이 국어, 수학, 영어, 과학, 사회 교과(편제) 반영
- 학년별 가중치 없음, 교과별 가중치 없음
- ※ 교과(편제)명에 따라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과목의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음

3. 인정범위 및 반영비율: 전형별 학생부 반영비율의 100%(기본점수 없음)

| 대 상 | 인정범위 | 반영 교과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졸업(예정)자 | 1학년 1학기 ~ 3학년 1학기 |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사회 |
| 조기졸업자* | 1학년 1학기 ~ 2학년 1학기 |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사회 |

* 조기졸업자는 학생부교과(고교추천전형) 지원 불가

4. 반영방법

<교과점수 반영방법>

가. 활용지표: 등급(성취도) 및 이수단위(학점)

나. 교과점수 산출 방법

1) 등급점수

| 구분 |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 8등급 | 9등급 |
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성취도 | A | | B | | C | | | | |
| 등급점수 | | 100 | 99 | 98 | 95 | 90 | 85 | 75 | 65 | 0 |

2) 교과점수 산출

$$\text{교과점수} = \frac{\sum(\text{과목별 이수단위(학점)} \times \text{등급점수})}{\sum(\text{과목별 이수단위(학점)})}$$

다.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. 단, 진로선택과목은 상위 5개 과목까지 반영

- 1)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진로선택과목 상위 5개 과목까지 반영하며, 이수한 진로선택과목이 5개 이하인 경우 모두 반영
- 2)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 상위 과목을 우선 반영하며, 성취도가 동일한 경우 이수단위(학점)가 큰 과목을 반영함

<비교과(출결) 반영방법>

가. 활용지표: 미인정(무단)결석일수

나. 비교과점수 산출 방법: 총점(1점)

| 미인정(무단)결석일수 | 0~5일 | 6~10일 | 11~15일 | 16~20일 | 21일 이상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점수 | 1 | 0.8 | 0.6 | 0.4 | 0.0 |

* 체육우수자(축구)전형만 해당

5. 비교내신: 검정고시 합격자, 외국고등학교 출신자, 2025년 2월 이전 졸업자, 학생부 성적이 없거나 학생부 등급산출이 불가능한 자 등은 논술점수/실적점수 등을 활용하여 산출

* 단, 학생부교과(고교추천전형)는 비교내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논술 반영 방법

1. 논술 유형, 출제경향

| 계열 | 출제경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자연계열 (약학과 포함) [수리논술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리적 분석력, 응용력,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-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수학적 주제를 다룸 -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이 옳으면 부분점수를 부여함 -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 -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 |
| 의학과 [수리논술 + 과학논술(생명과학)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리논술: 수리적 분석력, 응용력,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- 과학논술: 자연과학적 분석력, 응용력,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-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이 옳으면 부분점수를 부여함 -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 -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 |
| 인문계열 [통합논술(언어·사회)]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출제 - 요약형 혹은 비교·대조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 출제 - 요약형 문제의 경우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제시문에서 소주제문들을 간추려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 - 비교·대조형 문제의 경우 제시문들의 주제나 논점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·차이점을 한 편의 글이 되도록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 - 통합형 문제의 경우 3~5개의 독립된 제시문들을 주고 그 지문들을 서로 연결하는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(제시문들은 인문/사회분야를 비롯한 범교과 과정에서 골고루 참조) -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 |

2. 시험시간: 120분

수능 최저 학력 기준

| 전형 | | 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수시 | 학생부교과 (고교추천전형) | 전체 (의학과 제외) 국어, 수학(선택과목 제한 없음), 영어, 탐구(과탐, 사탐 중 1과목)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탐구 2개 과목만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없음 |
| | 학생부종합(ACE전형) | 의학과 국어, 수학(선택과목 제한 없음), 영어, 탐구(과탐, 사탐 중 2개 과목 평균) 등급 합 6이내 |
| | | 의학과 국어, 수학(선택과목 제한 없음), 영어, 탐구(과탐, 사탐 중 2개 과목 평균) 등급 합 6이내 |
| | 논술(논술우수자전형) | 약학과 국어, 수학(선택과목 제한 없음), 영어, 탐구(과탐, 사탐 중 2개 과목 평균) 중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|
| | | 의학과 국어, 수학(선택과목 제한 없음), 영어, 탐구(과탐, 사탐 중 2개 과목 평균) 등급 합 6이내 |
| | 정시 | 수능(국방IT우수인재2전형) |

※ 수능최저학력기준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(등급)으로 반영하며, 탐구영역은 직탐을 포함할 수 없음

체육우수자(축구)전형 실기평가 방법

1. 대상 전형: 실기/실적(체육우수자(축구)전형)
2. 실기평가 방법: 하프코트 미니게임, 풀코트 게임을 통해 체력 및 지구력, 기술 평가

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

1. 대상자: 전체 전형(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) 지원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조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
 - 가. 검정고시 또는 해외고 출신자 등의 경우에도 국내 고등학교를 일부 재학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존재하는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 확인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 - 나.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각 모집시기별 서류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적용함
(제출서류 접수 후 추가·삭제·수정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반영되지 않음)
2. 전형별 반영 방법
 - 가. 학생부종합전형: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함
 - 나. 학생부종합전형 외의 전형
 - 학교폭력조치사항 1호 ~ 8호는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전형총점 기준 최고 7점 ~ 최저 1점 감점 적용하며, 9호는 불합격처리함(전형총점: 수능위주전형 1,000점 만점 / 그 외 전형 100점 만점)
 -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장 큰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반영함

수능 반영 방법

1.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

| 계열 | 모집단위 | 국어 | 수학 | 영어 | 탐구 | 한국사 | 비고 |
|-----|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자연1 | 공과대학, 첨단ICT융합대학, 소프트웨어융합대학, 자연과학대학, 간호학과(일반전형4 제외), 약학과, 첨단바이오융합대학, 자유전공학부(자연) | 20% | 35% | 15% | 30% | 총점에서 등급별로 감점 | *수학: 선택과목 제한 없음 미적분/기하 선택 시 표준점수에 3% 가산 *탐구: 사탐, 과탐 중 택2 과학탐구 선택 시 백분위 자체 변환점수에 3% 가산 |
| 자연2 | 의학과, 국방디지털융합학과 | 20% | 40% | 10% | 30% | | |
| 인문1 | 경영대학, 간호학과(일반전형4) | 25% | 40% | 15% | 20% | | |
| 인문2 | 인문대학, 사회과학대학, 자유전공학부(인문) | 35% | 25% | 15% | 25% | | *수학: 선택과목 제한 없음 *탐구: 사탐, 과탐 중 택2 |

※ 계열은 본교 기준 계열을 의미하며, 지정된 영역 또는 선택과목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함(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)

※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탐구영역에 직탐 반영 가능

2. 수능 성적 활용지표

가. 수능성적 반영방법

| 국어, 수학 | 영어 | 탐구 | 한국사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
| 표준점수 | 자체변환점수 | 자체변환점수 | 감점방식 |

나. 수능총점 계산식: 2027학년도 수능성적 기준 각 영역별 점수의 합산(한국사는 수능총점에서 감점)

1) 국어, 수학: $\frac{\text{표준점수}}{\text{2027학년도 표준점수 최고점}} \times \text{반영비율} \times 1,000$

2) 탐구: $\frac{\text{각 과목의 자체변환점수의 합}}{\text{각 과목의 자체변환점수 만점의 합}} \times \text{반영비율} \times 1,000$

※ 자체변환점수는 2026학년도 수능성적 발표 후 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
※ 응시한 영역의 탐구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여 자체변환점수 산출

3) 한국사: 수능 등급별 일정 점수를 수능총점에 반영(감점 방식)

다. 영어 과목 변환점수: 아래 표의 환산방식에 따름

| 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 8등급 | 9등급 |
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변환점수(10%) | 100 | 98 | 96 | 84 | 60 | 40 | 20 | 10 | 0 |
| 변환점수(15%) | 150 | 147 | 144 | 126 | 90 | 60 | 30 | 15 | 0 |

라. 한국사 과목 반영점수표: 한국사 수능 등급별 일정 점수를 수능총점에 반영(감점 방식)

| 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 8등급 | 9등급 |
|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반영 점수 | 감점없음 | | | | -5 | -10 | -20 | -30 | -40 |

1. 학생부교과(수시)

| 전형 | 지원 자격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학생부교과 (고교추천전형) | 2024년 12월 이후 졸업(예정)자 중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학기를 인정가능유형의 고교에서 이수한 자로서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(고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) ※ 인정가능유형: 국내 일반고, 자율고, 특목고만 지원 가능하며 아래 해당자는 지원 불가 ① 특성화고, 종합 및 일반고 전문(실업)반 졸업(예정)자 ② 특목고 중 예술고, 체육고, 마이스터고 졸업(예정)자 ③ 일반고 재학 중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④ 방송통신고, 대안학교(각종학교),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및 일반고등학교의 대안교육 위탁학생 ⑤ 검정고시 합격자,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점수를 산출할 수 없는 자 ※ 조기졸업자는 지원 불가 ※ 2027학년도 수능성적 기준 지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미충족 시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함 |

2. 학생부종합(수시)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--|--|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생부종합 (ACE전형) |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생부종합 (첨단융합인재전형) |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수학 및 과학을 바탕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자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생부종합 (고른기회1전형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원자격</th> <th>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가보훈 대상자</td> <td>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: 보훈(지)청장이 발급하는 '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' 제출 가능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 출신자</td> <td>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※ 국내 일반고, 자율고,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 </td> </tr> <tr> <td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</td> <td>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</td> </tr> <tr> <td>②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</td> <td>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(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td> </tr> <tr> <td> 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에 소재해야 함 ※ 6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(구·동)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로 간주함[단, 행정구역 개편 후 부·모·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] ※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 ※ 12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(구·동)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로 간주함[단,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] ※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, 대안학교(인가·비인가), 국외고, 검정고시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※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(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)을 유지해야 하며,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※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(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) ※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</td> </tr> <tr> <td>특성화고 출신자</td> <td>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(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) 졸업(예정)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</td> <td>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</td> </tr> <tr> <td>②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</td> <td>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지원자격 |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| 국가보훈 대상자 |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: 보훈(지)청장이 발급하는 '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' 제출 가능자 |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 출신자 |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※ 국내 일반고, 자율고,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</td> <td>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</td> </tr> <tr> <td>②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</td> <td>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(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유형 | 내용 | ①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②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(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 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에 소재해야 함 ※ 6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(구·동)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로 간주함[단, 행정구역 개편 후 부·모·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] ※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 ※ 12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(구·동)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로 간주함[단,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] ※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, 대안학교(인가·비인가), 국외고, 검정고시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※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(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)을 유지해야 하며,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※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(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) ※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| 특성화고 출신자 |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(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) 졸업(예정)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</td> <td>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</td> </tr> <tr> <td>②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</td> <td>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유형 | 내용 | ①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②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
| | 지원자격 |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국가보훈 대상자 |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: 보훈(지)청장이 발급하는 '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' 제출 가능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 출신자 |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※ 국내 일반고, 자율고,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</td> <td>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</td> </tr> <tr> <td>②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</td> <td>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(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유형 | 내용 | ①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②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(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 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유형 | | 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①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②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(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 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에 소재해야 함 ※ 6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(구·동)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로 간주함[단, 행정구역 개편 후 부·모·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] ※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 ※ 12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(구·동)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로 간주함[단,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] ※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, 대안학교(인가·비인가), 국외고, 검정고시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※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(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)을 유지해야 하며,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※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(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) ※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특성화고 출신자 |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(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) 졸업(예정)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</td> <td>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</td> </tr> <tr> <td>②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</td> <td>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유형 | 내용 | ①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②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유형 | 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①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②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|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지원자격 ※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(종합고)를 의미함 ※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(예정)자는 대상에서 제외(특성화고 교육과정 졸업(예정)자는 지원 가능함) ※ 산업수요 맞춤형고(마이스터고등학교),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졸업(예정)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※ 특성화고교 출신자는 학생부종합전형(고른기회1전형)의 모집단위 중 공과대학, 첨단ICT융합대학, 소프트웨어융합대학, 경영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 |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와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따른 대상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※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 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생부종합 (고른기회2전형) |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79 674 1485 1473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79 674 395 705">지원자격</th> <th colspan="3" data-bbox="395 674 1485 705">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79 705 395 1196"> 사회 기여자 </td> <td colspan="3" data-bbox="395 705 1485 1196"> ①~⑥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(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)의 자녀 ②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(의무복무기간 제외) ③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④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⑤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※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의 재직기간 산정 시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함 ※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공무원의 각 근무기간은 합산 가능함 (단, 복수의 요건이 중복되는 재직기간은 중복산정하지 않음) ※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(또는 경력증명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)에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⑥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~다 지역에 소재 하는 근무지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※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·교육공무원·군인·경찰·소방공무원·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79 1196 395 1406"> 사회 배려자 </td> <td colspan="3" data-bbox="395 1196 1485 1406"> ①~③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① 아동복지시설출신자: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~5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② 장애인 부모의 자녀: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등급)인 자의 자녀 ③ 다문화가정의 자녀: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79 1406 395 1473"> 다자녀 가구 </td> <td colspan="3" data-bbox="395 1406 1485 1473">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의 자녀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지원자격 |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| | | 사회 기여자 | ①~⑥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(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)의 자녀 ②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(의무복무기간 제외) ③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④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⑤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※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의 재직기간 산정 시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함 ※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공무원의 각 근무기간은 합산 가능함 (단, 복수의 요건이 중복되는 재직기간은 중복산정하지 않음) ※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(또는 경력증명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)에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⑥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~다 지역에 소재 하는 근무지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※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·교육공무원·군인·경찰·소방공무원·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 | | | 사회 배려자 | ①~③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① 아동복지시설출신자: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~5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② 장애인 부모의 자녀: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등급)인 자의 자녀 ③ 다문화가정의 자녀: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| | | 다자녀 가구 |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의 자녀 | | |
| 지원자격 |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회 기여자 | ①~⑥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(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)의 자녀 ②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(의무복무기간 제외) ③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④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⑤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※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의 재직기간 산정 시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함 ※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공무원의 각 근무기간은 합산 가능함 (단, 복수의 요건이 중복되는 재직기간은 중복산정하지 않음) ※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(또는 경력증명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)에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⑥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~다 지역에 소재 하는 근무지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※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·교육공무원·군인·경찰·소방공무원·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회 배려자 | ①~③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① 아동복지시설출신자: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~5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② 장애인 부모의 자녀: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등급)인 자의 자녀 ③ 다문화가정의 자녀: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다자녀 가구 |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의 자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생부종합 (특수교육대상자 전형) (정원외) |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 ※ 지원자 본인이 장애인대상자 또는 상이등급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생부종합 (국방IT우수인재1전형) (정원외) |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ICT전문성 및 글로벌역량, 리더십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군 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 등)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* 2027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: 2031.06.01.(2001.06.02. ~ 2011.06.01. 출생자) * 군필자는 임관일 기준 나이 산정 시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군 복무기간별 아래의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3 1843 1493 192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43 1843 632 1874">복무기간</th> <th data-bbox="632 1843 916 1874">1년 미만</th> <th data-bbox="916 1843 1201 1874">1년 이상 ~ 2년 미만</th> <th data-bbox="1201 1843 1493 1874">2년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43 1874 632 1921">합산 나이</td> <td data-bbox="632 1874 916 1921">1세</td> <td data-bbox="916 1874 1201 1921">2세</td> <td data-bbox="1201 1874 1493 1921">3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79 1933 1493 2116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79 1933 472 1964">구분</th> <th data-bbox="472 1933 1493 1964"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79 1964 472 2116">군 인사법 제10조 (결격사유 등) 2항</td> <td data-bbox="472 1964 1493 2116"> 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,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복무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~ 2년 미만 | 2년 이상 | 합산 나이 | 1세 | 2세 | 3세 | 구분 | 내용 | 군 인사법 제10조 (결격사유 등) 2항 | 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,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| | | | |
| 복무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~ 2년 미만 | 2년 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산 나이 | 1세 | 2세 | 3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군 인사법 제10조 (결격사유 등) 2항 | 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,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<p>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,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·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<p>②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(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)</p> <p>③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※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</p> <p>④ 입학 후 당해 학년도 최초 학기 수강이 가능한 자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학생부종합 (지역의사선발 전형)</p> | <p>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'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으로, 법 제4조제2항,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[별표2]가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(초기졸업자 포함)</p> <p>○ 중학교: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2] 제1호가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·졸업하고,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</p> <p>○ 고등학교: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2] 제2호 각목의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·졸업(예정)하고,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77 920 1114 1193"> <thead> <tr> <th>진료권</th> <th>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경기도 의정부권</td> <td>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</td> </tr> <tr> <td>경기도 남양주권</td> <td>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양평군</td> </tr> <tr> <td>경기도 이천권</td> <td>이천시, 여주시</td> </tr> <tr> <td>경기도 포천권</td> <td>포천시</td> </tr> <tr> <td>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</td> <td>서구, 강화군</td> </tr> <tr> <td>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</td> <td>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옹진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지원자의 중학교, 고등학교 소재지역 및 거주지역은 모두 동일한 진료권에 해당해야 함</p> <p>※ 재학기간(입학~졸업)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</p> <p>※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(해당 지역 고교 재학 및 거주)을 유지해야 하며,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</p> <p>※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(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)</p> <p>※ 지원자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</p> <p>※ 진료권별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자는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졸업 후 해당 진료권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함</p> <p>※ 2028학년도 수능성적 기준 지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미충족 시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함</p> | 진료권 |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 | 경기도 의정부권 | 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 | 경기도 남양주권 | 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양평군 | 경기도 이천권 | 이천시, 여주시 | 경기도 포천권 | 포천시 |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 | 서구, 강화군 |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 |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옹진군 |
| 진료권 |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기도 의정부권 | 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기도 남양주권 | 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양평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기도 이천권 | 이천시, 여주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기도 포천권 | 포천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 | 서구, 강화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 |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옹진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3. 학생부종합(자율화)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 | | |
|---|---|----|----|------|--|
| <p>학생부종합 (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) (정원외)</p> | <p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'다' 목(아래 ①~④)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(2027년 3월 1일 기준)</p> <p>①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·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</p> <p>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 졸업자</p> <p>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</p> <p>④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산업체 재직기간, 인정범위 유의사항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77 1946 1506 2107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직기간</td> <td>- 2027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(제출서류로 확인가능한 기간)이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※ 재직기간 3년은 1,095일 기준으로 산정(3년×365일=1,095일) ·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, 재직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내용 | 재직기간 | - 2027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(제출서류로 확인가능한 기간)이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※ 재직기간 3년은 1,095일 기준으로 산정(3년×365일=1,095일) ·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, 재직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|
| 구분 | 내용 | | | | |
| 재직기간 | - 2027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(제출서류로 확인가능한 기간)이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※ 재직기간 3년은 1,095일 기준으로 산정(3년×365일=1,095일) ·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, 재직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| | | | |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
|----|-----------|---|
| | 구분 | 내용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,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•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-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-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- 원서접수 시작일 및 입학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 -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,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 |
| | 산업체 인정 범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 사업체 -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(농업, 수산업 등)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((농지원부 등) 확인을 통해 인정받은 자 -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(창업·자영업자 포함) 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|

4. 논술 및 실기/실적(수시)

| 전형 | 지원 자격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논술 (논술우수자전형) |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|
| 실기/실적 (체육우수자전형(축구)) | <p>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(단, 2024년 1월 이후 학력 인정자) 중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</p> <p>① 2024년 ~ 2026년 청소년대표 ※ 단, 국내·외 대회에 선발 및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(단순 소집 제외)</p> <p>② 2024년 ~ 2026년 전국대회 4강 이내 입상자</p> <p>③ 2024년 ~ 2026년 고등리그 왕중왕전, K리그 U18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※ 단, 위 ②, ③번 조건의 해당 기간 중 경기실적평가에 반영되는 대회(또는 리그) 가운데 최소한 1개의 대회(또는 리그)에서 1학년 때는 소속팀 출전경기 시간의 30% 이상, 2학년 때는 40% 이상, 3학년 때는 50% 이상 출전해야 함</p> <p>※ 포지션별 인원: FW(5명이내), MF(5명 이내), DF(5명이내), GK(2명이내) 선발 (단, 포지션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할 수 있음)</p> |

5. 수능위주(정시)

※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 함(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)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수능(일반전형 1,2,3,4(교차)) |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수능 (지역의사선발전형) | <p>◎ 수능(지역의사선발전형)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(지역의사선발전형) 미충원 이월 인원에 한하여 모집을 시행함</p> <p>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'복무형 지역 의사'가 되려는 사람으로, 법 제4조제2항,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[별표2]가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</p> <p>○ 중학교: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[별표2] 제1호가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·졸업하고,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</p> <p>○ 고등학교: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[별표2] 제2호 각목의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·졸업(예정)하고,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진료권</th> <th>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경기도 의정부권</td> <td>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</td> </tr> <tr> <td>경기도 남양주권</td> <td>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양평군</td> </tr> <tr> <td>경기도 이천권</td> <td>이천시, 여주시</td> </tr> <tr> <td>경기도 포천권</td> <td>포천시</td> </tr> <tr> <td>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</td> <td>서구, 강화군</td> </tr> <tr> <td>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</td> <td>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옹진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지원자의 중학교, 고등학교 소재지역 및 거주지역은 모두 동일한 진료권에 해당해야 함 ※ 재학기간(입학~졸업)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</p> | 진료권 |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 | 경기도 의정부권 | 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 | 경기도 남양주권 | 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양평군 | 경기도 이천권 | 이천시, 여주시 | 경기도 포천권 | 포천시 |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 | 서구, 강화군 |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 |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옹진군 |
| 진료권 |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기도 의정부권 | 의정부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기도 남양주권 | 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양평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기도 이천권 | 이천시, 여주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경기도 포천권 | 포천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 | 서구, 강화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 | 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옹진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<p>※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(해당 지역 고교 재학 및 거주)을 유지해야 하며,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</p> <p>※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(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)</p> <p>※ 지원자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</p> <p>※ 진료권별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자는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졸업 후 해당 진료권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함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수능 (국방IT우수인재2 전형) (정원외)</p> | <p>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, ICT전문성 및 글로벌역량, 리더십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</p> <p>① 군 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 등)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</p> <p>* 2026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: 2031.06.01.(2001.06.02. ~ 2011.06.01. 출생자)</p> <p>* 군필자는 임관일 기준 나이 산정 시,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군 복무기간별 아래의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7 618 1493 696"> <thead> <tr> <th>복무기간</th> <th>1년 미만</th> <th>1년 이상 ~ 2년 미만</th> <th>2년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산 나이</td> <td>1세</td> <td>2세</td> <td>3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0 712 1493 1335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군 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) 2항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,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,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·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(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)</p> <p>③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</p> <p>*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</p> <p>④ 입학 후 당해 학년도 최초 학기 수강이 가능한 자</p> <p>※ 2027학년도 수능성적 기준 지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미충족 시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함</p> | 복무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~ 2년 미만 | 2년 이상 | 합산 나이 | 1세 | 2세 | 3세 | 구 분 | 내 용 | 군 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) 2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,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,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·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|
| 복무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~ 2년 미만 | 2년 이상 | | | | | | | | | | |
| 합산 나이 | 1세 | 2세 | 3세 | | | | | | | | | | |
| 구 분 | 내 용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군 인사법 제10조(결격사유) 2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,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,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,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·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수능 (농어촌학생전형) (정원외)</p> | <p>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 고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로서 아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</p> <p>※ 국내 일반고, 자율고,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0 1648 1493 1966"> <thead> <tr> <th>유 형</th> <th>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</td> <td>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</td> </tr> <tr> <td>②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</td> <td>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(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에 소재해야 함</p> <p>※ 6년 과정 이수자는 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(구·동)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로 간주함[단, 행정구역 개편 후 부·모·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]</p> | 유 형 | 내 용 | ①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②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(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 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 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| | | | | |
| 유 형 | 내 용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①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기간 동안 본인, 부, 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②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 |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(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 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 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 | | | | |
|--|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 ※ 12년 과정 이수자는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(구·동)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로 간주함[단,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] ※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의 특수목적고, 대안학교(인가,비인가), 국외고, 검정고시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※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(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)을 유지해야 하며,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※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(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) ※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| | | | | | |
| 수능 (특성화고졸업자 전형) (정원외) | <p>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(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) 졸업(예정)자로서 다음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(종합고)를 의미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</td> <td>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</td> </tr> <tr> <td>②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</td> <td>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종합고의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(예정)자는 대상에서 제외(특성화고 교육과정 졸업(예정)자는 지원 가능함) ※ 산업수요 맞춤형고(마이스터 고등학교),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(예정)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| 유형 | 내용 | ①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②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
| 유형 | 내용 | | | | | | |
| ①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| | | | | | |
| ②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(학점) 이상 이수자 | | | | | | |
| 수능 (기회균형전형) (정원외) | <p>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[조기졸업자 포함]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와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따른 대상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※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, 지원 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| | | | | | |

6.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(수시)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|
| | <p>우리나라 학제(12학년)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,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| | | | | | | | | | |
| 모집인원내 (재외국민)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자격기준</th> <th>세부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부모의 국외근무 기간</td> <td>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(국외파견 재직자, 현지 취업자, 현지 자영업자 등)</td> </tr> <tr> <td>학력요건</td> <td>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우리나라 학제(12년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(6개월)에 한하여 인정함 ※ 2027.02.28.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,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(일본 4월 학제 등)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</td> </tr> <tr> <td>국외 재학기간</td> <td>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하는 기간동안,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(비연속 수료 인정) ◎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,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◎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</td> </tr> <tr> <td>국외 체류일수</td> <td>◎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◎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※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자격기준 | 세부내용 |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|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(국외파견 재직자, 현지 취업자, 현지 자영업자 등) | 학력요건 |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우리나라 학제(12년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(6개월)에 한하여 인정함 ※ 2027.02.28.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,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(일본 4월 학제 등)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| 국외 재학기간 |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하는 기간동안,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(비연속 수료 인정) ◎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,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◎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| 국외 체류일수 | ◎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◎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※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|
| | 자격기준 | 세부내용 | | | | | | | | | |
| |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|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(국외파견 재직자, 현지 취업자, 현지 자영업자 등) | | | | | | | | | |
| | 학력요건 |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우리나라 학제(12년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(6개월)에 한하여 인정함 ※ 2027.02.28.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,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(일본 4월 학제 등)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| | | | | | | | | |
| 국외 재학기간 |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하는 기간동안,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(비연속 수료 인정) ◎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,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◎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| | | | | | | | | | |
| 국외 체류일수 | ◎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◎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※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| | | | | | | | | | |

7.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(자율화)

| 전형 | 지원 자격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모집인원의 (전교육과정 이수자) |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(12학년)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※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,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| |
| | 자격기준 | 세부내용 |
| | 학력요건 | 국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※ 2027.02.28.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,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(일본 4월 학제 등)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|
| | 자격요건 |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「국적법」제6조 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※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에서 별도로 선발함 [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(홈페이지:www.ajou.ac.kr/iadmissions, ☎ 031-219-2171)] |
| 체류요건 | 국외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국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※ 전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,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인정 | |
| 모집인원의 (북한이탈주민) |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※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,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. 단,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| |

◎ 전형별 세부 지원자격 및 인정기준, 제출서류 등은 모집요강 참고